



■ 권 두 언

法之爲道前苦而長利 仁之爲道儉樂而後窮

-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로우며,
인의 도리는 처음에는 잠깐 동안 즐겁지만 뒤에 가서는 곤궁해진다 -

경감 정운식
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위 구절은 혼란했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이념적 토대인 법가사상이 정리된 '한비자'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우리 경찰이 고민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도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야간에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욕을 먹고, 떡살을 잡히고 더 나아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국민들의 공권력 경시풍조는 여전하고, 경찰에 입직하면서부터 듣고 있는 경찰의 법질서 확립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쩌면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 무원칙한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경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법 경시 풍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난 2007년 서울청에서 지구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찰의 공권력 실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이 64%, 불만족이 32%이고, 공권력이 약한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법 경시의 사회풍조가 42%,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입건 비율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음이 23%, 10% 미만이 32%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경찰서 인계시 사후 처리의 복잡함이 35%, 전반적으로 입건하지 않는 분위기여서가 27%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입건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로

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조직의 분위기가 68%, 경찰서 인계 후 업무·휴식시간에 지장이 없게 하는 처리 절차의 단순화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찰은 직원들 대부분이 경찰의 공권력 실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 경시의 사회풍조와 경찰서 인계시 사후처리의 복잡함 및 조직 내 관용분위기로 인해 반수 이상을 입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조직을 대하는 국민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화를 바꾸고 경찰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 스스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술 깨면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단 '내가 귀찮더라도 지금 조치해야 더 큰 사건을 막을 수도 있고, 내 동료, 내 후배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경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 스스로의 의식전환을 위한 내부 캠페인을 실시해 보았으면 한다. 내 동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서로 알려주고 격려해 주고, 특히 파출소장, 형사과장, 서장 등 일선 지휘관들이 '뭐 이런 걸 입건했어, 좀 참지'식의 분위기보다는 적극 독려하는 자세를 가져서 경찰전체의 분위

기를 바꾼다면 일단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경찰서마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1명씩 두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입건되면 담당 경찰관이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직원들이 더 이상 사후 처리의 복잡함이나 업무·휴식시간의 지장 때문에 사건처리를 불편해 하는 일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에 성립하는 모욕죄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원할 경우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고 조사를 받아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언론·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공무집행위반사범에 대한 적극적 보도와 기소 및 구속수사원칙을 확립하여 국민들에게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할 것 같다. TV에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시민과 이를 어찌지 못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보여 지거나,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사건에 대해 ‘법 만능주의’나 ‘국민 길들이기’라는 식의 신문보도가 계속되고, 힘들게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송치했는데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앞에서 하고자 했던 두 가지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다행히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다든 이유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가슴과 배를 수 회 들이민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자가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면허증을 집어 던진 경우나 심지어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판례를 계속 축적하여야만 향후 악질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민·형사상 피소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관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직원의 과실유무는 차후에 문제 삼더라도 그 직원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조직 전체의 사례를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옆의 동료도 그런 상황에서 소송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누가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또한 이와 관련된 민원사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다 발생하였다면 감찰계통에서 과감한 감경 또는 면책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경찰관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총은 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놈을 향해 던지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왜 총을 쏘지 못하고 던져야 할까. 만약 감찰과 소송계통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소신을 가지고 필요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우리 경찰의 공권력 집행도 총은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위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경찰관이 국민들 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진심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공감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저항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도리를 너무 중요시하여 인의 도리를 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법질서 확립, 그중에서도 경찰관의 공권력 집행행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았다. 새로운 것도 없고, 하지 않는 것도 없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어 모든 경찰관이 몇 년간만 고생(?)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PSI**

DDoS 공격의 개념과 7·7 사이버 테러

김 우 석
지식경제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팀

DDoS의 개요

2009년 7월 7일에 특정사이트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 발생하였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특정 국가의 웹 서비스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Denial of Service란 multi-tasking을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한 사용자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독점(hogging)하거나, 모두 사용해 버리거나, 파괴하여서 이 시스템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DDoS는 DoS 공격을 보다 효과적이며 강력하게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한다. DDoS 공격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수행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모든 행위를 denial of service (DoS) 공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DoS가 고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denial of service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루트 권한의 획득, 시스템이나 사용자 데이터의 파괴나 변조)를 끼치지 못하지만 시스템의 정상적인 수행에 문제(network 이나 시스템 서비스 등의 마비)를 일으킴으로써 사용자들의 많은 불편을 주게 한다.

DDoS 공격 유형

공격 유형으로는 PPS 증가(PPS Consuming), 웹 서비스 지연(Http Flooding), 대용량 트래픽 전송(Bandwidth Consuming)으로 나눌 수 있다. PPS 증가 공격은 TCP 프로토콜을 공격 하며, 공격 효과는 네트워크 장비 또는 보안장비, 모든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 웹 서비스 지연 공격은 HTTP 즉 서버등의 부하를 발생시키며, 피해가 발생 되는 시스템은 공격대상 시스템, 동일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웹 서비스를 공격하며, 공격 유형은 동일 웹 주소로 동시에 접속 시도 함으로써 웹 서버에 부하를 발생시켜 서비스를 못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대용량 트래픽 전송 공격은 UDP/ICMP 프로토콜을 사용해 공격이 이루어지며, 1,000~1,500byte 등 수십만의 pps를 발생시켜 회선의 대역폭을 초과하여 동일 네트워크 안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이다.

- PPS(Packet per Second) : 근거리 통신망(LAN)의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인터넷상의 컴퓨터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메시지의 형태로 보내기 위한 네트워크 규약
- Bandwidth :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의 차이
-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 웹상에서 파일(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그리고 기타 멀티미디어 파일)을 주고받는데 필요한 프로토콜
- UDP(User Datagram Protocol) :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내에서 컴퓨터들 간에 메시지들이 교환될 때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통신 프로토콜
-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 호스트 서버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메시지를 제어하고 에러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2009년 7월 7일 DDoS 공격

① 1차 공격(2009.7.5~7.6) 미국 21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 공격발생 시점 : 7.5 22:00~ 7.6 18:00 까지
- 공격 목표 : 21개 미국 주요 정부기관, 미국 금융기관, 미국 포털 사이트
- 특이사항 : 1차 공격 발생 이전에 7.5 02:00~14:00 까지 미국 정부기관 3군대를 공격한 것으로 보임.

21개 공격목표 전체는 사이트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짐
② 2차 공격(2009. 7.7~7.8) 국내 12개/미국 14개 주요정부기관, 금융,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 공격발생 시점 : 7.7 18:00~ 7.8 18:00 까지
- 공격 목표 : 국내 12개/미국 14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기관, 포털 사이트
- 특이사항 : 국내에서 7.7 DDoS 대란 1차 공격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공격 목표 사이트가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짐. 미국 주요 사이트에서 한국 IP의 접속을 차단함.

③ 3차 공격(2009. 7.8~7.9) 국내 15개/미국 1개 주요정보기관, 금융,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 공격발생 시점 : 7.8 18:00~7.9 18:00 까지
- 공격 목표 : 국내 13개/미국 1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기관, 포털 사이트
- 특이사항 : 국내에서 7.7 DDoS 대란 2차 공격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사이트들에서 DDoS 대응 장비 및 사이트 주소변경 등의 조치를 함. 미국 주요 사이트들에서는 한국 IP의 접속을 지속적으로 차단한 기관이 있음. 감염된 좀비 PC에서 하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변종이 발견(실제로 피해는 크지 않음).

④ 4차 공격(2009.7.9~7.10) 국내7개 주요정부기관, 금융,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 공격발생 시점 : 7.9 18:00~7.10 18:00 까지
- 공격 목표 : 국내 7개 주요 정부기관, 금융기관, 포털 사이트
- 특이사항 : 국내에서 7.7 DDoS 대란 3차 공격으로 알려져 있고, 공격 목표가 줄어들어 공격 목표의 트래픽 유입량이 크게 증가함. 좀비 PC는 최대 18만대 이상으로 파악됨.

⑤ 공격 종료(2009.7.10 18:00)

좀비 PC는 대략 20만대 내외로 추정되며, A은행 장비를 통한 IP 분석에서 약 188,000대의 좀비 PC를 추출하였음. 대부분 국내 PC로 추정되며, 3만대의 PC는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A은행의 좀비 PC 공격 시도 횟수를 분석한 결과 3만대의 IP는 HTTP Get Flooding을 매우 높은 횟수로 시도하였고, IP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인터넷 일반 사용자 IP로 확인됨.

7.7 DDoS 공격의 특징

표적이 된 사이트에 계속 공격 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이 프로그램에 감염된 PC(좀비)는 표적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게 된다. 이번 공격은 25개 사이트를 공격 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각 개인의 PC에 심어진 뒤 공격이 시작 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즉 공격 리스트가 처음부터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 **대규모 좀비 공격** : 최소 수 만대에서 최대 수십만대의 좀비 PC가 동원된 최대 규모의 DDoS 공격
- **소량 공격** : 좀비 PC당 매우 소량의 공격으로 기본 보안장비를 우회하도록 구성됨. 실제 이러한 유형으로 인해 국내 1차 공격시 초기 대응이 늦어짐
- **C&C(Command&Control)서버가 없는 최초의 DDoS** : C&C 서버가 없어서 명령 채널을 차단 할 수 없는 DDoS 방식
- **다양한 공격이 동시 발송** : 4~5개 이상의 공격이 동시에 발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격 목표가 이미 공격 리스트에 담겨져 있었음. 특정 날짜에 공격을 실행 하도록 하고, 업데이트 함.
- **정교한 TCP/HTTP** : 매우 소량의 공격으로 보안 장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초당 40pps 미만의 tcp 80포트 공격, 초당 20pps 미만의 http Get으로 공격하여 web server의 부하 유발

DDoS 공격의 예방

DDoS 공격은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공격 형태로서 치명적인 공격이다. 이제 기업단위를 넘어 정부기관 공격과 국가차원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 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공격을 효율적으로 탐지·차단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위협을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ISP간 연동되는 구간에서 통신 사업자 간 DDoS 트래픽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개인의 예방 대책은 윈도우 운영체제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액티브 X '보안경고' 창이 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고, P2P 프로그램의 사용을 하지 않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사이비종교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최경환 선임연구관/교육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한 국사회는 종교적으로 전형적인 다종교사회이다. 다종교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종교의 다원화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종교 및 종파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보다는 사이비종교와 같은 종교집단으로 인한 범죄가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다. 사이비종교는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으로 범죄 등 큰 피해를 낳고 있다. 사이비종교 문제는 분명히 사회적 큰 이슈이다.

종교를 빙자하여 종교적 신념이라며 병역거부와 수혈거부, 국기경례거부, 납세 및 교육거부 등도 행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이른바 백백교, 박태선장로교, 오대양교, 구원파, 승리제단 영생교, 다미선교회의 종말론, 아가동산교 등 각종 사이비·이단종교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다.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연구나 관련 연구 성과가 미미할 실정이다.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사이비종교의 범죄는 잘못된 교리와 종교활동에 의해 가출, 가정파괴, 상습사기와 금품 갈취, 감금, 테러와 폭행, 성폭행과 강간치상, 살인과 집단자살, 보복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종교문제로 인한 가출은 이후 재산탕진, 가정생활 소홀, 폭력행사 등 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결국에는 가족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 부부간의 경우는 한쪽의 가출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어 가정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인의 무리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남편의 방화나 폭력사건 등으로 가정이 파괴된 사례도 있다. 사이비종교 교주에 의한 조직적인 금품갈취, 재산 헌납 강요 및 상습적인 사기에 의해 신자들은 재정 파탄을 가져오고 있다.

성폭력과 강간치상 등은 사이비종교 교주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주에 의한 성폭행 등은 사이비종교 단체가 얼마나 반사회적, 비도덕적인 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이비종교에 의한 살인사건은 잘못된 교리와 종교활동에 의해서 자행되어지고 있다. 특히 집단자살은 오대양이나 미국의 인민사원의 경우와 같이 특정지역을 성역화한 폐쇄된 사이비종교 공동체일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이비종교 교주에 의한 강요된 타살이며, 사이비종교의 종착점이다.

사이비종교단체에 의한 보복범죄는 일차적으로 사이비종교의 교주를 부인한 신도들이나 또는 이탈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진다. 사이비종교에 염증을 느끼고 빠져나가려는 신도가 있을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행이 가해지기도 하며, 폭행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비종교단체나 교주를 언론매체를 통해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징으로 위협하거나, 폭행 및 테러를 가한다.

본 연구는 사이비종교의 현황 및 사이비종교사건의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사이비종교에 대한 경찰의 예방적 정보활동과 사건 발생시 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이비종교집단에 의한 범죄 재발이나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경찰의 종교정보 수집활동이 시급하며, 매우 중요하다. 사이비종교에 대한 정보는 사이비종교단체를 비롯한 신자와 이탈자, 범죄 피해자, 그리고 연구단체와 인터넷 등에서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인 오늘날에는 과거 일정지역에서만 떠돌다 자연 소멸되던 극악한 종교 범죄 내용들이 인터넷 덕분에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종교에 대한 안티카페나, 피해자대책 협의회 등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종교단체에 대한 조직과 기본교리, 그리고 인적 구성 등을 망라한 종합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경찰은 사이버종교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수집한 종교정보를 기초로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종교 단체의 활동 방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있을 것이다. 사이버종교단체로 인한 가출과 재산 갈취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이러한 사례는 또 다른 종교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예상되는 징후라 생각하고, 그러한 종교단체에 의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종교범죄 프로파일링의 활용을 통해 사이버종교의 교주나 광신자들에 의한 범죄나 재범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광신자들은 교리나 교주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나, 영적 분별력 대신 그 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더욱 더 광신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지금까지 사이버종교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신종종교 및 사이버종교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규범 등 관계법을 위반한 경우 이외에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사이버종교나 이단에 대해 규제를 위한 법 제정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에서와 같이 위험 종교집단 금지 규정이나, 형사혐의로 기소된 종교집단의 해체 권한 부여, 종교전담 정보기구에 권한 부여와 같은 사항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경찰청에 종교전담 정보기구를 두고 신종종교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사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제도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설

립, 민·관 상호협동체제 구축, 전담수사기관 운영, 종교범죄 수사전문교육기관을 세워 전문적인 전담 경찰관 양성 등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종교단체는 사이버종교나 이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며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제11호 당첨자 : 이승훈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유동열 연구관
편집위원 : 김학신, 임현규, 조은순,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과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정책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webmaster@psi.go.kr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일본의 폭력단대책법과 관련하여

정지운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폭력범죄조직의 변화와 특별법의 필요성

오늘날 폭력범죄조직은 과거의 기생적 형태에서 합법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등 자립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국제적으로 그 악명이 높은 범죄조직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폭력범죄조직도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이 자립적 형태로 변화한 가장 큰 이유는 폭력범죄조직을 유지할 자금을 안정적으로 얻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범죄조직이 합법기업화 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한 폭력범죄조직의 발견과 조직폭력범죄의 처벌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직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단일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특별법에 의한 일반법의 침식현상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있지만,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한 그 위험성과 피해의 면에서 본다면 다른 범죄와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상당수의 외국이 조직범죄에 관한 대책 입법을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폭력단대책법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유사성이 가장 큰 일본의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단대책법’이라 함)상의 제도를 소개하고, 나아가 조직폭력범죄 대책 법률의 제정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1년 5월 15일 법률 제77호로 제정된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은 총 8장 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단대책법 제2조(정의) 제1호는 ‘폭력적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별표에 명시된 범죄 중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한 위법한 행위”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는 형법 등 54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폭력적 불법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폭력단대책법 제3조에서는 폭력단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폭력단 연합체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정의 효력은 3년이다(제8조 제1항).

폭력단대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폭력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즉 폭력단의 외형과 폭력단의 폭력적 불법행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러한 외형을 갖춘 폭력단이 폭력적 불법행위를 할 경우 폭력단대책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우리의 조직폭력범죄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통제를 규정할 경우 그 폭력범죄조직의 활동범위가 축소되고 범죄의 발생 건수가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폭력범죄조직에 의한 범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의한 범죄이며,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통제방법은 일시적인 집중단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현재도 유사하다.

폭력조직범죄와 관련된 연구분야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연구분야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원의 유지 및 폭력범죄조직의 세력 확장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범죄’와 밀

접하며, 조직폭력범죄의 확정 및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주요 테마가 된다. 또한 타 범죄와 확연히 구별되는 재범의 문제로서 ‘교정 분야’가 조직폭력범죄와 긴밀한 연구분야로 이해된다.

폭력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마피아 등 국제적인 조직범죄가 대부분 관료 등 공무원의 부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에서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범죄에서도 유사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에게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폭력단대책법상 폭력단과 폭력단 연합체의 지정의 주체는 ‘공안위원회’로 되어 있다. 즉 일본의 폭력단은 일본경찰에 의한 직접적·사전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률이 주로 사전적인 통제방법보다는 사후에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위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죄의 대책의 중심은 항상 예방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할 때에만 법률에 의한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의 수립에서도 예방에 중점을 두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 의한 조직폭력범죄의 직접적·사전적 통제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은 사전적 대책으로서 규정하는 ‘지정제도’ 외에도 폭력단의 일반적인 수익형성행위를 통제하는 ‘폭력적 요구행위의 규제’, 조직원들의 집합용 등으로 사용하는 ‘사무소의 사용제한’, 신입 조직원에 대한 통제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가입강요의 규제’, 형사상의 처벌 외에 피해자에 의한 민사적인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지정폭력단의 대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폭력단에 대책으로서 민간인에 의한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활동의 촉진’ 등을 규정한다.

특별법제정의 방향

모든 법률은 사회현상을 규율할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폭력단대책법도 당연히 일본의 폭력단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폭력단대책법이 규정하듯이 폭력단의 존재자체를 우선 인정하고 폭력단이 계속 유지될 수 없도록 제반 여건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은 현재 조직폭력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제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에게 적합한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범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한 폭력단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제도’,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리의 법률 제정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조직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내지 보호도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의한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이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능동적·적극적 활동의 근거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국민의 생활 보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고 그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았음은 경찰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 원인의 일부는 경찰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범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위해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직범죄와 비조직범죄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의 폭력단대책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PSI](#)

■ 안보동향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실상

유 동 열 선임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우 리는 지난 7월 7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대규모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주요기관 홈페이지가 장시간 다운되는 이른바 사이버대란(大亂)을 겪은바 있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 국가안보의 중요 영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보도로 국내외에서 북한의 사이버 운용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공작의 유형과 실태를 소개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사이버공작 유형

최근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 사이버공작은 ① 사이버 선전선동, ② 정보수집, 해킹 등 사이버테러, ③ 사이버간첩교신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이버 선전선동이다.** 북한은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인터넷사이트 70여개 망(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백두넷 등)을 구축해놓고, 이를 통해 국내 친북좌파세력과 연계된 심리전차원의 선전선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이버전담부서이다. 북한은 친북사이트에 게재된 안보위해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국내 재야단체의 자료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올려놓고 이를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이 여기저기 퍼다 유포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사상오염(적색의식화)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사이버공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선군노선 등을 미화·찬양하는 북한원자로나 선전물들이 광범위하게 널려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투쟁과 관련한 촛불시위시 북한의 선

전선동내용(반미, 반정부, 반자본투쟁 선동)과 유사한 내용들이 인터넷공간에 급속히 유포된바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레드바이러스(Red Virus)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례이다.

둘째, **사이버정보수집 및 테러이다.** 북한은 예전 같으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의 데스크에 앉아 매일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망에 접속하여 조직동향, 관련자료 등을 스크린하고 각종 정보를 손쉽게 수집·탐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군내 사이버전담부서는 한국내 군기관, 정보기관, 주요 기관 등에 대한 정보수집, 허위정보 및 역정보 유포, 해킹 및 유사시 이들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테러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셋째, **사이버 간첩교신 유형이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 적발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모씨 사건을 보면, 이메일을 통해 160여 차례 대북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달 받았음이 드러났다.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사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대북보고와 교신을 해왔음이 재확인되었다.

일심회의 총책인 장마이클은 호주, 미국 등 해외에 서버 둔 이메일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PC방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정세 동향, 특정 정당의 주요당직자 신원 분석자료,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미활동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한 바 있다.

향후 북한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간첩교신 수단으로 첨단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를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가노그래피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불리우는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과학적 기법이다.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작 전개의도와 역량

북한이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남사이버공작을 전개하는 의도는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3,400여 만명에 달하고(세계 9위, 인구비례로는 세계5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율이 1,500만여명(세계4위)을 돌파하여 대다수 국민이 이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인터넷(Internet)공간을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이버공간을 '적화혁명의 해방구'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사이버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라크전쟁 이후 북한군 최고수뇌부들을 모여 놓고 "지금까지의 전쟁은 알 전쟁, 기름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들을 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의 정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1990대 중반 무렵부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무력부 소속의 국방과학원, 평양지휘자동화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김책공대 등을 통해 사이버기술, 사이버전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온바 있으며 현재 사이버 기술역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전사들은 당 및 군의 대남공작기구의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되어 사이버정보 수집, 해킹, 대남선전선동, 가이버교란 및 사이버전 대비훈련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현대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은 중요한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사이버공간의 특징인 활용의 편이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사용자의 익명성 등을 활용하여 대남사이버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인터넷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 등 IT관련 첨단기술력의 향상으로 사이버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정교화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위해활동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인터넷공간을 이용하여 체제선전 등을 통한 친북의식화와 대남 정보수집, 사이버테러 및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이버전(戰)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된다. 특히 이번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되나 기술적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이버공간의 난해함을 보여준다. 이번에 자행된 DDos 유형의 공격은 사이버테러의 아주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대대적인 고난도의 사이버테러전을 전개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중대한 체제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공작전술과 수행체계 및 투쟁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보통신방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제의 보완, 사이버안보법(가칭) 신설, 사이버안보관련 부서의 확대 및 정예화, 일반 사이버경보와 차별화된 안보부문의 '사이버안보 경보시스템'의 구축, 사이버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전문가 양성, 사이버윤리 및 안보교육 시행, 민간차원의 사이버방어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대두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바,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요망된다. **PSI**

■ 외국 경찰교육기관

중국형사경찰학원(中國刑事警察學院)

- CHINA CRIMINAL POLICE UNIVERSITY -

김학신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중국형사경찰학원(中國刑事警察學院)의 역사

중국형사경찰학원(中國刑事警察學院)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직속의 고등교육 기관이다(중국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대학교, 대학원을 말함). 그리고 학원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개념의 학원이 아니라 대학교나 단과대학도 학원이라고 함. 여기서 학원(學院)은 단과대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형사경찰학원은 1948년 5월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최초 동북공안간부학교(東北公安干部學校)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중앙인민경찰간부학교(中央人民警察干部學校), 공안부 제1 인민경찰간부학교(人民警察干部學校), 공안부인민경찰간부학교(公安部人民警察干部學校)로 변경되었고, 1981년 11월에 현재의 중국형사경찰학원(China Criminal Police University :CCPU)로 명명되고 있다.



중국형사경찰학원(中國刑事警察學院)의 인원

현재 형사경찰학원에는 학사과정의 학생 5,000여명, 석사과정 300여명, 통신강의생 5,000여명, 교직원 683명, 이 중에서 교수 80명, 부교수 98명 그리고 101명의 강사가 있다. 교수 중에는 공안부에서 특별 초빙한 수사 전문가 1명, 정부 특수보조금을 받는 전문가가 15명, 공안부급 보조금을 받는 전문가 12명이 있다. 교수 중 3명은 '전국공안부계

통2급영모(二級英模)'의 명예칭호를 얻고, 2명의 교사는 '전국공안과기영재(科技英才)'의 명예칭호를 얻었다(영모英模:영웅과 모범 노동자를 뜻함, 과기영재科技英才:과학기술 영재). 게다가 공안사법기관의 외부 교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중국형사경찰학원의 학과 및 과정 분류

형사경찰학원에는 조사계, 경제범죄조사계, 컴퓨터범죄조사계, 형사과학기술계, 법의학계, 공안기초교육연구부, 법률교육연구부, 사회과학교육연구부, 기초교육연구부, 경제교육연구부로 나누어 설립되어 있다.

학부전공과정은 조사학, 경제범죄안전조사, 치안학, 금독(禁毒)학, 공안정보학, 정보안전, 형사과학기술, 공안시각·청각기술, 법의학, 경찰견(犬)기술 등 10개 과정이 있으며, 또한 조사학, 법의학, 형사과학 기술 등 3개의 제2학사학위전공과정이 있다. 그리고 소송법학, 형법학, 화학분석, 컴퓨터응용기술, 법의학, 군사교육훈련학, 법률석사 등 7개의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있다.

경찰학원(警察學院)은 국가계획 그리고 중국 공안부의 계획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60여년이 넘게 경찰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형사경찰학원의 교육과 학술 활동

형사경찰학원(刑事警察學院)의 매년 교육 규모는 3,000 ~ 4,000여명이며 현재 중국 전역에 23개의 통신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고, 조사학과 형사과학기술의 학부과정을 통신강의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상무부(商務部)와公安부(公安部)의 위탁을 받아, 중국경찰교육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37개 국가의 129명 경찰관이 이곳 형사경찰학원(刑事警察學院)에서 형조기술(刑偵技術)을 가르치고 있다.

형사경찰학원(刑事警察學院)은 교학(敎學), 과학연구 등의 운영성고가 탁월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찰학원은 국가급으로 우수한 3학과, 성(省), 부(部) 급 우수한 19학과, 요녕성(遼寧省) 명장사 3명, 요녕성 전문학술 대표자 2명, 요녕성 우수 교학단체 3개가 있다. 그리고 이 학원 20여종의 교재는 국가, 성(省), 부(部) 급의 우수교재로 채택되었다.

또한 형사경찰학원(刑事警察學院)은 시각실험실과 실험훈련을 중시하여, 현재 전국 각지에 52개의 실험실과 실험훈련장(관) 20개, 교학실습실 25개를 설립하였다. 특히 문서검역실은 중국公安부의 아주 중요한 실험실이다.

그리고 형사경찰학원(刑事警察學院)은 중국형경찰학원학보(中國刑警學院學報)와 중국형사경찰(中國刑事警察) 2종의 학술간행물을 출판, 발행하고 있다.

형사경찰학원의 부속기관으로는 ‘동북아 마약 문제연구센터(東北亞毒品問題研究中心)’, ‘형사정보연구훈련센터(刑事情報研究培訓中心)’, ‘중국민속언어와 은어, 특수언어 연구소(中國民俗語言與隱語行話研究所)’와公安부조사국연합의 ‘형사범죄대책연구센터(刑事犯罪對策研究中心)’, 조사·형사과학기술 등 각종 기술연구실 11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여러 항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이 학원에서 학술논문 1,600여 편을 발표했으며, 2008년 경찰학원은 지방공안기관에 1,747개의 안전을 협조하고, 1,683부의 검정서를 써주었다.

중국형사경찰학원(中國刑事警察學院)은 외국과의 개방된 교류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국제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한 국가로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한국(2008. 5. 26~31. 경찰수사연수원에 중국형사경찰학원의 관계자들이 방문하였음), 홍콩 등 10여개 국가의 고등교육학교(대학교 및 경찰학교)와 경찰기구 등과 우호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매년 대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부터는 영국의 University of Ulster와 유학교류를 체결하여, 양 학교의 학사학위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호주의 Charles Sturt University와도 위와 같은 유학 교류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맺 으 며

중국형사경찰학원은 중국 동북 요녕성의 심양시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면적 약27만m², 건축면적 15만m²로 단지형 학원이다. 도서관서적은 65만여권, 전자도서 77만여권이 있다. 조사실험훈련센터, 조사전술 훈련장, 컴퓨터 광장, 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체포격투훈련장 등이 있다.

60여년 이래, 중국형사경찰학원은 10여만명 졸업생이 배출되어 중국 전역의公安사법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형사경찰학원은 “충성, 탐구, 단결, 분진(분발해 나아가다)”의 교풍으로 과학발전관과 경찰 수업의 질에 강력히 세우고, 쉬지 않고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는 학원 운영으로, 형사경찰학원이 국제일류형사경찰학교가 되도록 노력 하고 있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현안 업무 보고

치안정책연구소는(소장 김길배 치안감) 2009년 7월 22일 경찰청 무궁화 회의실에서 경찰청장 및 각 국·관 참석 하에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 최근 연구 결과물에 대한 치안시책 활용 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를 보고하였으며, 또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중·장기 치안정책연구를 위한 경찰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소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보고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규정 개선 T/F팀 구성

치안정책연구소는 2009년 7월 23일에 치안정책연구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연구역량강화, 연구의 질적 향상 및 연구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팀장은 조용관 연구부장이며, 팀원은 최경환, 김운영, 김학신, 임현규, 김시묵으로 연구관 및 운영계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용역연구과제 중간발표

2009년 7월~8월간 3회에 걸쳐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전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위촉연구과제 및 용역(지정)연구과제 연구위원이 연구에 대하여 중간보고 후 전 연구관과 연구주제 및 중점 연구 사항 대해 의견 교환 및 연구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날짜	연구위원	연구과제명
7.30	제성호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연구
8.3	정용기	흉악범 신상공개 필요성 검토
8.5	이서행	독도를 수호한 경찰 경비사정립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과제 발표회의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7월 6일과 7월 13일 2회에 걸쳐, 전 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하반기 책임연구과제 발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들이 수행할 책임연구과제의 주제에 대하여 각자 발표를 하고 상호 의견 교환 및 연구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

또한 8월 14일에는 김학신 연구관(생활안전대책연구실)이 중국 경찰기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관 동정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국방부에서 2009년 7월에 배포한 국가정체성 확립관련 정훈교재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의 대한민국』의 제5장 ‘국가안보위해세력 실체’와 관련 부분을 집필하였다. 또한 7월 2일 경찰청 보안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2009년 보안정책자문과제 수행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 정지운 연구관 및 정용 연구관(범죄수사연구실)은 2009년 7월 17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 개최된 교육기관 교수요원·수사전문가 워크숍(주제: 수사발전 연구모임의 방향과 미래)에 참가 후 2009년 7월 20일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경찰수사 발전을 위한 수사연구 모임 활성화 방안 과 형사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사경찰 진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연구관들과 논의하였다.

◆ 인사발령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연구관으로 이기수 경정이,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으로 여태수 경감이,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으로 김용민 경감이 8월 12일자로 부임하였다. **PSI**

치안정책연구소 직제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2009년 7월 24일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치안행정연구실의 기능을 정책기획연구실로 통합하고, 날로 중요시 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대책 연구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구조개혁문제를 이론적으로 지원하고, 수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수사구조개혁연구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앞으로도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개편된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치안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2009.7.24 개편)

